

# 안 전 기 준

## 텐트

## 부속서 9

### (Tent)

#### 1. 적용범위

이 기준은 취침용, 주거용, 여행용으로 야영 또는 등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텐트에 대하여 적용한다.

#### 2. 관련규격

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검사기준 및 방법에 인용됨으로써 이 검사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구성한다. 이러한 관련표준은 그 최신표준을 적용한다.

**KS K ISO 5912** 야영용 텐트

**KS K 0409** 실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: 외올법

(ISO 2062 : 1993, Textiles - Yarns from packages - Determination of single-end breaking force and elongation at break, MOD)

**KS K 0520** 직물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: 그레브법

(ISO 13934-2 : 1999, Textiles - Tensile properties of fabrics - Part 2 : Determination of maximum force using the grab method, MOD)

**KS K 0521** 직물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: 스트립법

(ISO 13934-1 : 1999, Textiles - Tensile properties of fabrics - Part 1 : Determination of maximum force and elongation at maximum force using the strip method, MOD)

**KS K 0863** 텍스타일-부직포 시험 방법-제4부 : 인열 강도 시험 방법(트래피조이드법)

**KS K 0901** 섬유 시험실 표준 상태

(ISO 139 : 1973, Textiles - Standard atmospheres for conditioning and testing, MOD)

**KS B ISO 2768-1** 일반 공차-제1부 : 개별 공차 표시가 없는 선형 치수 및 각도 치수에 대한 공차

**KS K ISO 105-B04** 섬유-염색견뢰도 시험-내후견뢰도 : 크세논 아크법

**KS K ISO 7152** 야영용 텐트와 캐러밴용 천막-용어 및 유사어 목록

**KS K ISO 8936** 캐러밴용 오닝-안전 요구사항

**KS K ISO 8937** 캐러밴용 차일-요구 기능과 시험법

**KS K ISO 10966** 천막과 야영용 텐트 직물-명세

**KS M ISO 527-1** 플라스틱-인장성의 측정-제1부 : 통칙

**KS M ISO 527-3** 플라스틱-인장 시험-제3부 : 필름 및 시트의 시험 조건

**KS M ISO 1420**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-물 침투 저항 시험 방법

**KS M ISO 1421**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-파단시 인장 강도 및 신장률 측정 방법

**KS M ISO 2409** 페인트와 바니시-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

**KS M ISO 4892-1** 플라스틱-실험실 광원에 의한 노출 시험 방법-제1부 : 통칙

**KS M ISO 4892-2** 플라스틱-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시험 방법-제2부 : 제논-아크 광원

**KS M ISO 7253** 도료와 바니시-중성 염 분무 저항성 측정

**ISO 105-A02** Textiles - Tests for colour fastness - Part A02 : Grey scale for assessing change in colour

**ISO 8570** Plastics - Film and sheeting - Determination of cold-crack temperature

소방방재청고시 방염성능의 기준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에 의한 섬유제품분야 상품별 품질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

#### 3. 용어와 정의

공급자적용에확인사항측면 17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에 따른다.

### 3.1 형태와 분류

#### 3.1.1 취침용 텐트(sleeping tent)(S형)

취침용으로 사용되는 텐트로서 다음의 두 종류로 나뉜다.

- a) st등급(표준 중량형 텐트) 중량이 2kg을 초과하는 텐트로 1인당 1kg씩 증가한다.
- b) l등급(경량형 텐트) 중량이 2kg 이하인 텐트로 1인당 1kg씩 증가한다.

#### 3.1.2 여행용 텐트(touring tent)(T형)

설치하고 해체하기에 용이한 주거용 텐트를 말한다.

#### 3.1.3 주거용 텐트(residential tent)(R형)

오랜 기간(예를 들면 봄에서 가을까지) 설치하기에 적당한 주거용 텐트를 말한다.

### 3.2 설치 공간(pitching area)

지면에 텐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총 공간[받침 로프(guy rope) 포함]을 말한다.

### 3.3 기본 공간(base area)

외부 텐트 벽을 경계로 해서 지면에 접촉되는 공간(진흙벽 제외)을 말한다.

### 3.4 사용 가능 공간(usable area)

#### 3.4.1 텐트의 거실(living area of tents)(T형 및 R형)

텐트의 기본 공간 중 거실 목적으로 지정된 부분을 말한다.

#### 3.4.2 취침 공간(sleeping area)

텐트의 기본 공간 중 취침을 목적으로 지정된 부분을 말한다.

### 3.5 수용력(capacity)

텐트 설계시 고려되는 성인 수를 말한다.

### 3.6 거실(living room)

텐트에서 보관, 요리, 기립 및 착석(테이블과 의자)을 위한 부분으로 짐 보관 공간은 제외된다.

### 3.7 짐 보관 공간(wardrobe)

텐트에서 짐과 의류를 놓아두기 위한 부분을 말한다.

## 4. 종류

다음과 같이 종류별로 구분하여 돔형인 경우에는 “돔형텐트 4각형” 등으로 표시하고, 절충형의 경우에는 “A형텐트 + 캐빈형텐트” 등으로 표시한다.

- (1) 에이형텐트(A Type Tent): 벽있음, 벽없음으로 구분
- (2) 돔형텐트(Dome Tent): 사각형, 육각형으로 구분
- (3) 반원통형텐트(Tunnel Tent)(그림 1 참조)
- (4) 가옥형텐트(Cabin Tent)(그림 2 참조)
- (5) 절충형텐트(A Type Tent)

(주) 상기 종류와 다른 모델 및 종류에 대해서는 제조자의 제시된 사양에 따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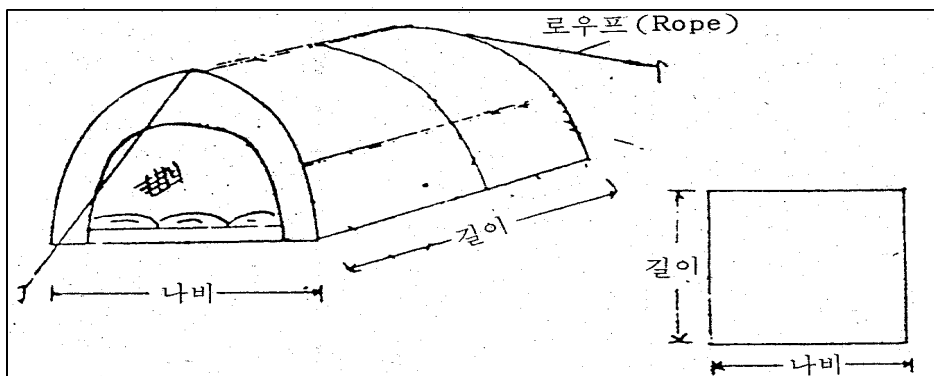


그림 1 - 반원통형텐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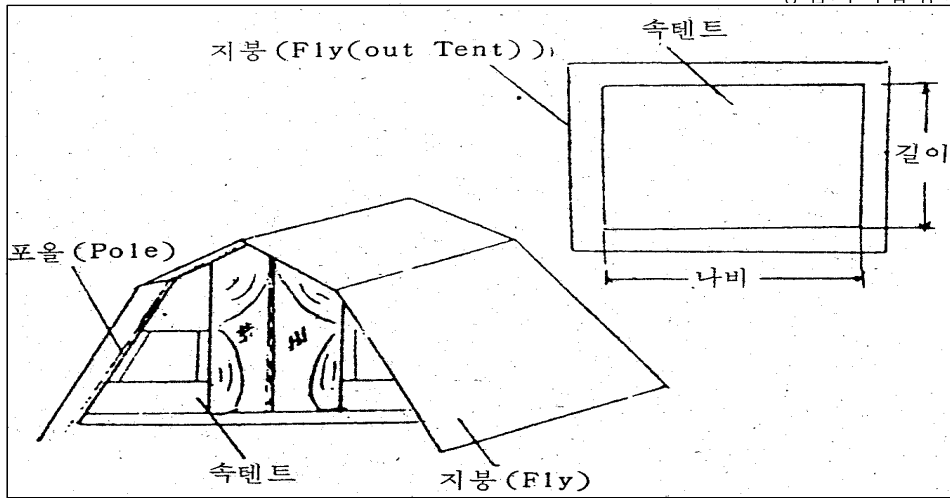


그림 2 - 가옥형텐트

5. 재질

텐트를 구성하는 섬유재료에 대한 표시방법은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에 의한 섬유제품분야 상품별 품질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표시하여야 한다.

6. 치수

- (1) 벽이 있는 에이형 텐트의 경우 벽의 높이는 300 mm 이상이어야 한다.
- (2) 높이, 나비, 길이는 표시치의 -30 mm 이상이어야 한다.
- (3) 텐트의 면적(나비×길이)은 수용인원(표시가 2~3인용은 2인, 3~4인용은 3인 등으로 계산) 1인당 9 000 cm<sup>2</sup> 이상이어야 한다.(표 1 참조)

표 1 텐트의 치수

(단위 : mm)

| 종 류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용인원                 | 높 이  | 나 비  | 길 이  |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에이형 텐트<br>(A Tent)     | 벽있음                      | 3                    | 900  | 1400 | 1900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4                    | 1050 | 1800 | 1900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                 | 1350 | 2100 | 2000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6                    | 1500 | 2400 | 2400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8                    | 1700 | 2600 | 2600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벽없음                      | 2                    | 900  | 1000 | 1900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3                    | 1050 | 1400 | 1900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4                    | 1350 | 1800 | 2000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                 | 1500 | 2400 | 2400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돔형 텐트<br>(Dome Tent) | 4각형  | 3    | 1350 | 2100 |
| 5                      | 1500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2600 | 2300 |      |
| 6각형                    | 3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1100 | 2050 | 2250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4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1300 | 2150 | 2300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1500 | 3000 | 3600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8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1820 | 3450 | 3950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반원통형 텐트<br>(Tunnel Tent) |                      | 4    | 1300 | 1600 | 2000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1500 | 1800 | 2400 |      |
| 가옥형 텐트<br>(Cabin Tent) | 4                        | 1350                 | 2000 | 2000 |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6                        | 1500                 | 2400 | 2600 |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8                        | 1700                 | 3000 | 2000 |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10                       | 1900                 | 3200 | 2600 |      |      |

주 표 1은 참고치로서 권장치수임

## 7. 방염제품

“방염제품”이라 함은 방염처리하거나 난연성소재로 제조한 제품을 말하며 방염제품이라 표시하였을 경우는 소방방재청고시 방염성능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## 8. 표시사항

**8.1 일반사항** 다음형식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. 단, 사용상 주의사항은 별도의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.

### 8.1.1 재질

### 8.1.2 치수(높이x나비x길이) 및 수용인원

### 8.1.3 제조연월

### 8.1.4 제조자명

### 8.1.5 수입자명

### 8.1.6 주소 및 전화번호

### 8.1.7 방염제품(방염제품인 경우에 한함)

### 8.1.8 사용상 주의 사항

### 8.1.9 화재예방의 주의표시

## 8.2. 사용상 주의 사항

- 1)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보관방법 사용방법 세탁(손질)방법, 화재예방, 기타 주의사항을 표시한다.
- 2) 화재예방에 대한 주의표시는 다음과 같이 쉽게 읽고 볼 수 있는 위치에 화재방지를 위한 주의문구를 텐트내부에 부착되어야 한다.
  - ① 주의문구의 넓이는 7 cm × 15 cm 이상이 되어야 한다.

## 화 재 예 방

- 안전한 야영을 위해서는 아래의 상식적인 규칙을 따를 것
- 벽, 지붕 및 커튼 근처에서 요리, 가열 및 점화 기구를 놓지 말 것
- 항상 이들 기구의 안전지침을 따를 것
- 어린이를 점화기구근처에서 놀지 못하도록 할 것
- 비상구를 항상 비워 둘 것
- 화재방지 도구가 있는 위치를 숙지할 것

|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 | 정 | :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-35호(2007. 1. 24)      |
| 개 | 정 | :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-454호(2007. 8. 2)      |
| 개 | 정 | :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-979호(2009. 12. 30)    |
| 개 | 정 | :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-686호 (2015. 12. 30) |
| 개 | 정 | :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-0033호(2017. 2. 8)   |
| 개 | 정 | :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-195호(2018. 6. 29)   |